

중국 방송수신료체계

이 화
중국 변호사

- I. 머리말
- II. TV의 보급 및 유선 디지털 TV 서비스로의 전환
- III. 방송수신료 체계
 - 1. 기본 업무비용
 - 2. 유료채널 수신료
- IV. 중국 방송요금징수의 법적 근거
 - 1. 중국 유선방송 촉진을 위한 규정
 - 2. 방송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
- V. 방송요금 징수에 따르는 어려움
 - 1. 사용자의 인식부족
 - 2. 요금징수 방법의 부적절함
 - 3. 유선TV 서비스에 대한 불만

I. 머리말

중국 대륙의 유선TV 발전은 시작이 늦은 편이었으며, 1980년대에서야 큰 상업도시에서의 케이블 설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유선TV는 상당히 보급되었으며, 사용자도 방대한 규모를 가지게 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을 가져왔다. 각 도시마다, 심지어 농촌의 향(鄉)과 촌(村) 행정단위도 유선TV 회사를 갖고 있다. 국무원 방송TV 행정부문은 전국 각 지역의 TV방송국의 설립계획을 추진하며, TV방송국의 수량, 전국에서의 분포와 구조를 확정한다. TV방송국은 현, 시 이상 행정단위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문에서 설립하며, 개인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설립하지 못하며, 국가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성격의 TV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¹⁾

중국의 유선TV 프로그램은 행정구역별로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뉜다. 우선, 중앙TV방송국에서 제공하는 18개 채널이 있고, 그 외에는 성급(省級) TV 방송국의 TV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시 및 현급에서 TV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의 유선TV에서는 봉황위성방송(鳳凰衛視), 화우위성방송(華娛衛視), 성공위성방송(星空衛視) 등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²⁾ 중앙TV 방송국의 모든 채널과 각 성의 제1채널과 제2채널은 위성으로 전송되며, 각 지방의 유선TV 방송국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수신을 거쳐, 본 지방의 유선TV망 프로그램에 추가한다.

TV는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소스이자 중국 매체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에 와서 TV 시청은 중국 시민들의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방송수신료는 상당히 광범위한 시민들이 교부하는 요금이다.

방송사업의 발전에 따라 방송수신료 체계의 마련,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효과적인 운영의 담보는 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II. TV의 보급 및 유선 디지털 TV 서비스로의 전환

1990년대에 들어서서, TV가 중국의 일반인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때 당시의 ‘방송TV관리조례’에 따르면, 방송요금에는 “설계비, 설치비, 검수 및 테스트비, 건설비와 시청 및 유지비”가 포함되었으며, 그 기준은 상급 방송행정관리부문이 동급의 물가행정관리부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이로부터, 중국의 TV수신요금은 프로그램 제작비가 아닌, 주로 설치비와 유지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고 있다.

1) 방송TV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제8조 및 제10조.

2) 광둥(廣東)지역의 유선TV에서는 홍콩 방송TV유한회사의 비취채널(翡翠臺), 명주채널(明珠臺)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주강(珠江) 삼각지역에서는 마카오 위성 중문채널을 볼 수 있다.



중국은 TV 수신료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초, 한 가정당 설치비를 80위안~120위안이었다. 90년대 후기에는 300위안 정도의 설치비와 매달 10위안 정도의 유지비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유럽 등 국가의 1/30이며, 인도, 남미 등 국가의 1/20이다.³⁾

2003년에, 중국의 광전총국(廣電總局) 부문에서는 일련의 디지털TV 발전의 전략방침을 제정하였으며, 유선TV의 디지털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디지털TV 서비스로의 전환은 전문적이고 개성 있는 서비스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경영 성격과 기능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중국의 유선 디지털 TV의 전체적인 전환은 현재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 2006년 말까지, 청도, 항주, 심천, 대련, 불산, 태원, 남경, 남녕, 은천 등 25개 도시에서 시 단위의 케이블 TV 전환을 완성하였다.⁴⁾ 그리고 일부 도시와 지역은 현재 유선 디지털 TV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유선방송국의 업무도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방송수신료 체계가 확립되었다.

Ⅲ. 방송수신료 체계

1. 기본 업무 비용

유선TV 시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설치비, TV 시청 유지비, 이동비 등이 있다.

(1) 설치비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있는데, 주로 4가지 종류가 있다.⁵⁾

1) 주택사용자와 영리성격의 사용자의 설치비

예를 들어 중경유선TV방송국과 광서유선TV방송국, 남경유선방송국은 주택사용자의 설치비를 매호당 260~380위안을 받고 있으며, 영리성격의 사용자에게는 매호당 450~800위안을 받는다.

3) 薛倩, “我国有线电视网已成网络新宠”, 广播电视信息, 2000年12期.

4) 赵凌, “有线数字电视公共节目定价中的机制设计”, 2008年 3期, 现代经济探讨, p.78쪽.

5) 자료 발표시간 2001년. <http://www.rti.cn/info.asp?id=20010111a00090001>.

2) 광케이블 사용자, MMDS 사용자 및 HFC 사용자의 설치비

예를 들어 산서성은 광케이블 사용자와 MMDS 사용자의 설치비는 매호당 300위안이며, HFC 사용자는 매호당 500위안이며, 10%내에서 이 가격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파트와 단층집에 따른 구분

아파트의 설치비는 단층집보다 매호마다 20~30위안이 저렴하다.

(2) TV 시청 유지비

TV 시청 유지비는 기본채널 수신료로 이해할 수 있다. 유선방송 기본채널 프로그램은 주로 국가가 규정한 반드시 전송해야 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TV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중앙TV방송국의 일부 채널과 교육TV방송국과 각 성의 제1채널 TV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중국의 유선TV 네트워크 운영회사들은 위에서 서술한 공익적 성격의 TV 프로그램을 반드시 전송함으로써, 당과 정부에서 선전,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장한다.

중국의 광전총국(廣電總局)⁶⁾에서 반포한 ‘유선 디지털 TV 기술의 새로운 체계를 설립할 데 관한 의견(建立有线数字电视技术新体系的实施意见)’에 따르면, 기본업무는 응당 60여 개의 공공 프로그램 채널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채널 시청요금은 유선 디지털 TV 기본 유지비를 참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 성과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주소의 사용자의 첫 번째 TV에 대해서는 매월 25원 정도의 TV 시청 및 유지비를 받는다. 두 번째, 세 번째 TV의 TV 시청 및 유지비는 첫 번째 TV 시청 및 유지비의 절반 정도이다. 그러나 네 번째 TV 시청 유지비는 첫 번째 TV 시청 및 유지비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1) 지역에 따른 TV 시청 유지비의 차이

성(省) 내의 유선TV 요금표준을 제정할 때, 성 내에서의 서로 다른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① 산서성(山西省)

산서성은 최근에 와서야 유선 디지털 TV의 기본 시청 및 유지비를 징수하기 시

6) 광전총국의 총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방송, TV, 영화 총국’인데, 중국의 방송, TV 영화 관련 정책, 법규 및 발전 기획 등을 총관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도시지역 유선TV 시스템 관리 잠정규정’(2004년 8월 1일 규정)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전국 도시지역의 유선TV 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현급 이상 지방 방송TV 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지역 유선TV 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작하였다. 세트톱 박스(Set-Top Box) 구매는 사용자가 구매하여야 한다. 기존의 요금징수 기준은 시행기준이며 시행기간은 1년이다. 농촌의 현행 아날로그 유선 TV 시청유지비는 다음과 같다. 4~8개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사용자당 매달마다 6위안이고, 9~10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9위안, 21개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12위안이다.

② 천진(天津)

천진의 유선 디지털 TV 기본요금기준은 매달 20위안 기준이다. 작년 8월부터 천진시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가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디지털 TV 전환 수수료, 세트톱 박스(지능카드 이전) 수수료, 사용자 관리 자기카드 재발급 등 관련 서비스에 한 차례당 10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새로운 관리 자기카드를 재발급 하거나 변경하는 사용자로부터 관리자카드 값 5위안 을 받는다. 사용자가 지능카드를 구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지능카드 값 120위안을 받는다.

③ 곤명시(昆明市)

곤명시의 유선 디지털TV 기본요금은 매달 24위안 기준이다. 기본요금을 지불 하면 기본채널을 볼 수 있고,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④ 하문시(廈門市)

하문시의 유선 디지털 TV 기본요금은 매달 22~28위안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하문시 현재의 유선 디지털 TV 요금은 매달 12원으로서, 이 요금은 1996년의 기본요금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 하문시 커뮤니티에서 디지털TV로 전환 후, 여전히 동 기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디지털TV가 기술개조, 재료비용, 인력비 등에서 상당한 폭으로 비용이 높아지고, 기존의 방송TV네트워크 회사에서 밀지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TV 기본요금은 조만간 22~28위안으로 오른다.

⑤ 주해시(珠海市)

주해시 유선 디지털 TV 기본요금은 25.5위안이다. 주해시 유선 디지털 TV 기본요금은 선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매달 초마다 25.5위안의 TV 시청료 및 유지비를 선불한다.

⑥ 복주시(福州市)

복주시 물가국은 올해 8월 하순에 복주시에서 가격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성의 유선 디지털 TV의 기본 시청 및 유지비 기준의 신청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연다. 기본요금이 10위안 정도 오를 전망이다. 새로운 기준이 출범되기 전인 현재, 복주시 유선 디지털 TV 기본시청유지비는 매달 13위안이다.

⑦ 섬서성(陝西省)

섬서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다음과 같다. 섬서성의 현 행정 단위 이상의 도시주민 사용자인 경우 매달 25위안을 지불한다. 섬서성의 현 행정 단위 이하의 농촌주민 사용자의 경우 매달 20위안을 지불한다. 섬서성의 도시 및 농촌주민이나 사용자의 두 번째 TV 시청유지비는 매달 10위안이다. 호텔, 식당 등 영리단체에서 지불해야 하는 유선TV 시청유지비는 도시주민 사용자의 기본요금보다 25% 내로 협상하여 거둔다. 유선TV 디지털화 전체 전환과정에서, 디지털 TV를 시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도시주민의 사용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국가 광전총국에서 규정하는 아날로그TV 프로그램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요금은 매달 5위안이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디지털 유선 TV망은 더 이상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다.

⑧ 영하성(寧夏省)

영하성 유선 디지털 TV 시청유지비 기본요금은 확정되었다. 성 내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세 개의 기준에 의하여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기본요금은 25.5위안, 24위안, 22.5위안이다.

중국의 기타 성과 시 행정단위의 유선 디지털 TV 시청 및 유지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다. 중경은 22위안/달, 호남은 24.5위안/달, 심천은 28위안/달, 대련은 24위안/달, 청도는 22위안/달, 상하이 37위안/달, 광서는 26위안/달이다.

2) 주민사용자와 비주민사용자를 구분한 요금기준

유선TV 디지털의 전체 전환 이후, 중국 대륙의 대부분 성과 시의 유선TV 요금은 큰 폭으로 상향조절되었다. 조절 폭은 일부 경우에 거의 1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각 성과 시의 조절 후의 요금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주민사용자, 공공기관과 공공사업부문, 군부대, 학교, 비영리적인 병원 등 비영리적인 그룹의 사용자에게는 TV 한 대당 받는 요금은 주민사용자가 지불하는 첫 대의 TV 수신료와 동일하다. 영리성격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통 주민사용자가 지불하는 첫 대의 TV 수신 유지요금보다 20%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TV 수신시간과 결부하여 네트워크 전송 회사와 사용자가 협상하여 확정한다.

(3) 이주비

일반적으로는 50위안에서 100위안이며, 일부 지방에서는 설치비의 50%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2. 유료채널 수신료

현재까지 전국의 유선 디지털 사용자는 이미 1,200만을 초과하였다. 중수미디어(中数传媒), 상해문광(上海文广), 정시미디어(鼎视传媒), 중영그룹(中影集团), 중국유선(中国有线) 등 5대 TV 부가서비스 채널 운영단체들은 각자의 시장을 기본 형성하였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130여 개의 디지털 방송 TV 프로그램 중, 부가채널 TV 프로그램은 112개가 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에는 유료채널, 영상신청, 인터넷 연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TV 서비스 운영기업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현재 청도와 심천 같은 시범도시에서는 디지털TV로 전환을 하였으며, 시청자는 기본서비스인 유선TV 유지비를 지불해야 하는 동시에, 부가서비스인 디지털TV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청도와 같은 경우는 매달 10위안이며, 심천은 한달에 18위안이다. 최근에 CCTV에서 6개의 부가서비스 채널의 요금은 58위안/달이다.

곤명시 유료프로그램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상해문광(上海文广)의 14개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매달 6위안이다. 양시풍문(央视风云)의 14개의 프로그램 시청에 28위안/달, 가정영원(家庭影院)의 1개의 프로그램 시청에 27위안/달, 제일극장(第一剧场)의 1개의 프로그램 시청에 36위안/달, 정시다(鼎视多)의 17개 프로그램 시청에 27위안/달, 온라인고시(在线考试)의 1개의 프로그램 시청에 18위안/달, 친친베이비(亲亲宝贝)와 애완동물모임(宠物汇)의 2개 프로그램 시청에 40위안/달이다. 유료프로그램은 기본요금을 지불하는 기초하에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IV. 중국 방송요금징수의 법적 근거

1. 중국 유선방송 촉진을 위한 규정

중국 정부는 디지털TV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을 제정 및 발표하였다. 동시에 관련되는 기술규범들도 채택하였다.

우선 TV 방송국의 설립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였다. 2004년 8월 18일 중국 광전총국은 '방송TV관리조례'에 따라 TV 방송국 허가 관리방법을 출시하였다. TV 방송국이라 함은 유선, 무선, 위성 및 기타 방법으로 사회공중에게 방송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기관을 가리킨다.⁷⁾ 이 기관에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과 중외합작경영의 TV 방송국이 포함되지 않는다. TV 방송국의 설립에는 다음

의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국가 방송TV 사업과 산업발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방송TV 산업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가 규정하는 방송TV 전문 인력, 기술과 필요한 장소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로 명확한 채널확정과 정확한 전송범위 등이 있어야 한다. 중앙내별의 TV 방송국의 설립, 합병은 광전총국의 기준을 거쳐야 하며, 지방급 TV 방송국의 설립과 변경은 동 지방급의 행정부문이 상급의 TV 방송행정부문에 신청을 하고, 상급 TV 방송행정부문에서 심사를 거쳐, 광전총국에서 비준한다.

2003년에 중국 광전총국은 ‘중국 유선TV의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시간표’를 제정하여, 유선 디지털 TV 발전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확립하였다. 2005년 초, 광전총국 개발은행과 함께 ‘금융협작을 개발할 데 관한 기본구성 합의(開發性金融合作框架協議)’에 사인을 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은 각 지역의 유선TV의 디지털 전체전환 사업을 위하여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유선 TV 네트워크 운영기관의 체제 전환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시 내별의 행정단위의 도시 네트워크 운영자가 디지털TV를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유선방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세금 감면 규장제도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은 ‘청도시 유선 디지털 TV 수입 영업세금을 면제할 데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於免徵青島市有線數字電視收入營業稅的通知)’를 반포하였다. 동 통지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건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청도시의 유선TV 네트워크 센터에서 규정된 표준에 따라 징수한 유선 디지털TV 기본요금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로 기타 도시에서 유선 TV 디지털화의 전체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모두 영업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디지털TV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2. 방송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

2004년 12월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광전총국은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의 관리에 대한 잠정방법(有線電視基本收視維護費管理暫行辦法)(이하 유

7) 방송TV관리조례 제2조.



지비 잠정방법이라 칭함)을 반포하였다. 동법은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와 유선 TV 사용자의 가격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방송요금 징수에 있어서 주요한 법적인 근거이다.

(1)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의 정의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는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가 케이블과 광케이블 등 방식을 통하여, 유선TV 사용자에게 국가 TV 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은 기본 시청 채널에 대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다.

‘방송TV관리조례(广播電視管理条例)’에 따라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라 함은 국가 혹은 성급 방송TV 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 방송TV 전송업무에 종사하며, 유선TV 배분 네트워크와 유선TV 사용자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선 TV 네트워크 전송회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유선TV 시청유지비를 받은 측은 더 이상 정부 부문이 아니라, 네트워크 경영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중국이 ‘유선TV 국’과 ‘유선TV 네트워크’를 따로 분리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2) 방송요금 산정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의 가격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고, 요금징수 기준은 가격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⁸⁾

정부에서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를 정함에 있어서, 유선TV 네트워크 운영의 합리적인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금액에 따라 결정한다. 유선TV 방송요금의 산정은 가격 주관 부문의 제정한 요금징수 표준을 참조해야 한다.

(3) 방송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

1)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의 서면신청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경영원가나 지출이 뚜렷한 증가를 초래한 경우, 유선TV 기본 시청 유지비의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관련 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는 가격 주관부문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방송요금 징수표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는

8) 유지비 잠정방법 제3조.

첫째, 요금징수표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이유,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수준과 조정 후 감소하거나 증가된 금액, 둘째, 요금징수 표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유선TV 사용자에게 대한 영향, 셋째, 요금징수 표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데 사용한 재무 회계표와 최근 3년의 서비스 원가 변화상황 등을 포함한 데이터 자료와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⁹⁾

2) 관련 정부당국의 고려 요소

동 신청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관련 당국은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기술의 향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지의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도 부합되어야 한다.¹⁰⁾

신기술이 채택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됨으로 하여 유선TV 기본 시청 유지를 조정할 경우, 유선TV 네트워크 경영자는 합당한 과도조치를 취하여, 유선TV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¹¹⁾ 유선TV 기본시청 유지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의 가격결책에 따른 공청방법(政府價格決策聽証辦法)’과 ‘정부의 가격을 제정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규칙(政府制定價格行為規則)’에 따라야 한다.

3) 유선TV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청회 절차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에 따르면, 중요한 공공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정부가 가격을 정하거나 정부가 지도하는 가격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가격 주관 관련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에서 정부가 지도하는 가격을 시행하거나, 정부가 확정하는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격과 생산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와 관련 부문에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의 공청방법(政府制定價格聽証辦法)’에서는 규정하건대, 광범위한 시민의 이익에 밀접히 관련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가격, 공익성 서비스의 가격과 자연독과점 경영의 상품가격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격을 제정하는 경우 응답 가격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9) 유지비 잠정방법 제8조.

10) 유지비 잠정방법 제11조.

11) 유지비 잠정방법 제11조.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행위규칙(政府制定價格行為規則)에서는 정부가 거시경제에 대하여 시행하고 점차 완벽하게 조정함으로써, 시장이 가격과 제도를 형성하게끔 해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범위는 ‘가격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가격 결정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제정 목록은 응당 사회경제발전의 상황에 비추어 제때에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수권을 한 시·현 인민정부가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는 시 및 현의 가격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가격결정기관은 법적 기준의 권한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가격을 결정하면 아니 된다. 가격의 제정은 응당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사회 평균 원가와 시장의 공급 상황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 및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과 국제시장 가격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국무원 가격 주관부문과 성급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은 서로 다른 항업의 특징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V. 방송요금 징수에 따르는 어려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다수의 유선TV 사용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방송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유선TV의 디지털화 개혁의 초기에 전국 각 지역의 상황이 상이하고, 새로운 기술과 설비가 보급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하여, 방송요금 징수에 있어서도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1. 사용자의 인식부족

중국의 방송TV는 장기적으로 공익사업에 속하였기 때문에 중국시민들은 무료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TV를 시청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에 습관이 되었다. 방송매체와 관련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선TV의 개혁과 산업화 경영에 대한 선전이 부족하다. 또한 유선TV 디지털 서비스 전환 후, 서비스 품질의 개선, 기상정보, 교통정보, 다채로워진 TV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된 유선 TV 시청비용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요금징수 방법의 부적절함

방송요금 징수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에는 사용자가 관련 방송요금 지불장소에 가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 은행에 방송요금을 납부하는 방식,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각 사용호마다 방문하여 징수하는 방법, 촌민위원회나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징수하는 방법, 기업에서 통일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방송요금을 모두 징수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160여만 사용자가 있는 상하이 유선TV방송국의 매년 방송요금 징수비율은 85%이고, 일부 지역은 요금 징수율이 70%에도 못 미친다.¹²⁾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가 방송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유선TV 서비스에 대한 불만

특히 농촌지역의 일부 유선TV 네트워크는 설비가 노화되고, 전송서비스가 좋지 않다. 잡음이 있거나, 신호가 끊기거나 중단현상이 발생하며,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소홀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유선TV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들은 유선TV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방송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¹³⁾

12) 裴藝元, 有線TV收費難及其對策思考, 中國有線電視, 1998年 第1期, 21쪽. 余亮, 有線電視收費工作模式探討, 中國有線電視, 2006年(18), 1859쪽.

13) 王松坡, 農村有線電視收費難題及對策, 西部廣播電視, 2005年 第4期, 67쪽.